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(송갑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23

발의연월일: 2020. 6. 29.

발 의 자:송갑석・인재근・민형배

김원이・박 정・김경만

전용기 · 이용빈 · 이용선

정춘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항공우주산업의 개발을 위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,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.

그런데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항공우주산업의 현황이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, 현행법은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.

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및 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 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시기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<신 설></u>	개 정 안 제3조의2(실태조사) ① 산업통상 자원부장관은 항공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기본계획 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 립·추진하기 위하여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
	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 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	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·시기·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